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치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견본주택 운영 안내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견본주택은 사전예약 없이 일반관림이 가능하나, 실내 인원에 따라 관림이 지연될 수 있으며, 주요 분양일정에 따라 일반 고객 관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견본주택 일반 관림은 방문 기간 내 입장이 가능하며, 시아버 견본주택으로 병행하여 운영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상용면적: 경기도 평택시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 3BL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최고 29층 12개동 총 1,20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특별공급 540세대 (기권추진 특별공급 104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20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88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5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93세대) 포함) - 입주시기: 2027년 02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Table with columns: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Includes summary row for total counts.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 면적입니다.
- 상용면적은 인부차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플랫폼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나,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Table showing payment schedule: 약식표기, 등별(라인별), 공급세대수, 총구분, 해당세대수, 분양가격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Includes rows for different unit types and payment stages.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봉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공급금액 납부확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1차 및 2차 계약금 일자는 정당계약 기준이며, 정당계약 일정 이후 계약일에 따라 1차 계약금 잔액 및 2차 계약금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례로 납부 시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분양금액은 사업주체 자체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고층 소유권 이점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상응하되 비공개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입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특목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 자격요건

Table: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 (단위: 세대)
Columns: 구분(약식표기), 84A, 84B, 103, 합계.
Rows: 일반(기관추진)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합계.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므로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일반(기관추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04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을 받은 본인.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가 높은 해당 기관직원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청약대상 기간인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외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지사재부지제자 제외
※ 추천기관

Table: 추천기관
Columns: 구분, 관련 법규, 해당 기관.
Rows: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20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자격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외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만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며 합계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자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188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격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외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임양의 경우 임양관계증명서(자녀 및 친양자의 경우 임양관계증명서 상임양친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내역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배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실적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1. 군복무 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실확인서(사)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3. 유자녀 부부모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산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등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5.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35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여야 함)
- 소득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자격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인수율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93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임양을 포함, 혼인 중인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인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정치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1인가구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함.(단, 지자체 반도체벨리 해링턴 플레이스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의 경우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불가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1년 내에 소득(「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을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무이자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무의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1. 군복무 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실확인서(사)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3. 청약자격이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산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등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5.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7호(2023.02.28.))에 따른다.

3 일반공급 신청자격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 현재 평택시에 6개월 이상 (2023.08.29.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거나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 자녀(녀양육, 형제(제)부양) 중 입주자자격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근로자,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에별로 청약 접수 가능함.

-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 제5항 및 「평택시 고시」 제202151호에 의거하여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2023.08.29 이전부터 계속 거주) 한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 세대 발생 시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자격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Table: 민영주택 청약 예외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Columns: 구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Rows: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102㎡ 이하, 전용면적 135㎡ 이하, 모든 면적.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외기준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기준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 비고: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한다.

4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Table: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Columns: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Rows: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 스마트폰 앱: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정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바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 접수(순행방문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1000~1400)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0900~1600)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목록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등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 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Table: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Columns: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Rows: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명단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은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Table: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Columns: 구분,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예정), 장소.
Rows: 당첨자 서류제출(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별도 안내 예정.

- ※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대상자 포함)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청약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신청내역 및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예정으로, 별도 안내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첨 및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계약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 사업주체 및 기타사항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VAT포함)
Table with columns: 구분, 감리금액, 감리회사, 감리금액.
Table with columns: 구분, 공사명, 감리사, 감리금액.
■ 상기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대시보중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지역역 반도체벨리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는 주택대시보중공사의 보증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Table with columns: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Table with columns: 구분, 대표 시행사, 시공사 겸 공동 시행사, 상호, 평택가제피에프비 주식회사,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평택시 가재길 127 (가재동), 평택시 가재길 127 (가재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국덕동), 법인등록번호, 131311-0280704, 110111-6770154, 전화번호, 031-656-1209, 02-707-7114.
■ 대표 홈페이지: https://www.지역역반도체벨리해링턴플레이스.com
□ 견본주택 위치: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산28-8 지역역 반도체벨리 해링턴 플레이스
□ 분양문의: 031-656-1209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입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모집공고의 내용은 최근까지(23.11.10.)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반영된 참고자료로서, 지역과 주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